

입찰공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1년도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」 수행기관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2. 22.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: 2021년도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(16개 권역)
-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수: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, 총 10개소
 - 강원, 경남, 광주, 대구, 대전(세종), 부산, 인천, 전남, 충북, 충남
 - ※ 2019년도 3년 지정기관 권역인 경기, 서울, 제주(이상 3개)는 공고 제외(진흥원 공고 제2018-222호)
 - ※ 2020년도 3년 지정기관 권역인 경북, 울산, 전북(이상 3개)는 공고 제외(진흥원 공고 제2019-231호)
 - 필요한 경우 복수의 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하되, 이 경우 「공동계약운용요령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0호 '20.4.7.)」 준용
 - *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“공동이행방식”만 가능
 - ** 구성원 수는 5인 이하,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% 이상
 - ***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 및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 불가

□ 지원사업 수행기관 역할

가. 공통사항

① 지역별 (예비)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

-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참여가 필수
- (예비)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등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당사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 생태환경 조성
 - * 지역내 정부사업 추진 기관(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, 민간위탁기관), 자치단체(기초 포함), NGO, 종교단체, 기업, 학계, 공공기관, 지역별 사회적기업협의회·협동조합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
-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등과 컨소시엄 운영 가능
 - * 다만, 지원기관의 업무 성격상 행정지원에 해당하는 각종 심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해관계분야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필요

② 개별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자원연계(지역 중견기업 경영자, 자원봉사자, 프로보노 등) 체제 구축

- 중앙단위의 프로보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내 프로보노를 발굴하고, 지역 내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에 알선
 - * 개별 기업마다 선발 기업가·프로보노(경영자문단) 매칭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사항 해소
 - ** 지역 자원 한계가 있는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·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매칭

③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차년도 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이전까지는 사후관리 및 일상적 상담 업무 수행

나. 사회적기업 부문 I - 사회적기업 지원

① 신규 모델 발굴 · 확산

- 광역 자치단체 단위 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
 -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내 적용 가능한 신규 모델 발굴 · 확산
- 여러 정부부처 ·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유도하여 신규 모델을 발굴

②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

- 사회적기업 등 지원대상 파악 및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
-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인증 신청에 필요한 조직전환, 정관구비 등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
- 사회적기업 제도, 인증요건 · 절차 등 설명회 개최
-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위한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현장실사 및 현장조사표 작성(인증 신청 전 지원기관 사전 검토)
-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원
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한 인증신청 지원

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
-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름

* 2021년도 부처형 ·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 지원

④ 재정지원 사업 지원

-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지침에 따름

⑤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

- (예비)사회적기업 등의 기업상황을 파악하고, 각종 자원을 활용

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를 직·간접적으로 제공

- 인증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, 사업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
- 서비스 수요,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DB 구축(자치단체, 기업 등의 지원현황 관리도 포함)
 - 사회적기업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·관리를 통해 경영지원의 연속성 확보
- (예비)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안내
 - (예비)사회적기업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기업에 적합한 자금지원제도* 안내

* 정책자금지원(미소금융, 중소기업정책자금, 신용보증재단 및 기금,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등) 및 민간금융기관(우리은행 등) 사회적기업 전용 상품 등

⑥ 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

-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및 관리 지원
 -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교육 및 사업보고서 검토 등
-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지원
 - 자율 경영공시 홍보, 참여기업 모집 및 공시 자료 작성 교육, 검토 등

⑦ 행정 지원

-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에 따른 행정지원 및 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현장 지원
- 기타 고용부, 광역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

⑧ 홍보,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

- 지역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·배포
- 각종 홈페이지에 지역별 활동 현황,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(SNS를 통한 지역 내 홍보도 포함)

- 일자리참여기관 ·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교육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
- 그 외 (예비)사회적기업 발굴 ·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

9 투입인력 요건

- 사회적기업 부문 I 전담인력(투입률 80%이상)을 최소 4명 이상 고용(사회적기업 부문Ⅱ-기초경영지원사업 투입인력 제외)

다. 사회적기업 부문Ⅱ- 기초경영지원사업 운영

1 권역내 (예비)사회적기업 통합경영현안 진단 및 수요발굴

- 경영지원이 필요한 권역내 (예비)사회적기업 현황* 파악 및 방문 등을 통한 경영 진단 실시
 - * 재정지원사업 종료(예정)기업 및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방문 등을 통해 진단보고서 작성
-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‘기초경영지원사업’을 적극적으로 안내/홍보(홈페이지, 뉴스레터,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)하여 상담, 코칭 수요 발굴 및 신청접수 지원
 - *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등과 연계 가능

2 기초경영지원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

- 지원기관 전담자가 1차적으로 (예비)사회적기업의 신청, 발굴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 니즈 및 현안을 파악하고, 해결가능 범위에서 전담자가 직접 해결 지원
 - * 인사/노무, 회계/세무, 법무/법률, 사회적기업가 멘토링 등 보다 전문적인 지원 필요시 전문가(POOL)를 연계 건당 1~3회(12시간) 내외 상담 지원
- 1차 상담 이후 추가적인 전문가의 상담, 코칭 수행 과정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

- 지원기관 전담자, 전문가(POOL)의 상담 및 코칭 범위를 넘어서 추가적인 지원은 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사업으로 연계

③ 지원기관 내 전문가POOL 구성 및 운영

-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영 문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인적/물적 자원과 연계한 '전문가(POOL)'을 구성*
 - * 일정 자격을 갖춘 노무사 및 회계사, 권역 내 사회적경제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사회적기업가(멘토), 기타 (예비)사회적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적합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필요
- 전문가(POOL)의 사회적기업 제도 및 경영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, 간담회 등을 실시

④ 기타 지원

- 기타 (예비)사회적기업에 기초경영지원사업 지원체계, 상담·코칭 진행절차 등 안내, 실시 계획 등 관련 사항 전파
- 권역 내 기초경영지원 우수사례를 발굴/추천하고, 권역 단위 성과 공유의 자리(간담회, 워크숍 등) 마련
-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
- 그 외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⑤ 투입인력 요건

- 3년 이상 사회적경제 지원 경력을 가진 기초경영지원 전담인력 (투입률 80%이상)을 최소 1명 고용
 - *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영현안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및 심화경영지원 연계 지원이 가능한 실무인력으로 구성, 총괄책임자와는 분리하여 구성

라. 협동조합 부문 지원

- ◇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컨설팅 등 인가지원 내실화
- ◇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파악 및 경영공시 지원 기능 강화
- ◇ 지역에서 정부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협동조합이 내실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

1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 지원

- 설립 전 (사회적)협동조합 적합성·운영원리 등과 관련된 기초 교육 진행
-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 요건, 절차 등 설명회 개최
- 협동조합 설립 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상담 및 컨설팅, 설립 신고 서류 검토/보완 지원
-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상담 및 컨설팅, 설립인가 신청서류 검토/보완 지원
- 타 법인이 (사회적)협동조합 운영 원리를 따라 설립을 희망할 경우 조직변경을 통한 설립 지원
- 부처로 접수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실사 전 설립 요건 충족 여부 검토, 실사 시 사회적기업진흥원과 동행하여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한 인가 적합 여부 의견 제시
 - 참여인력 실무역량 강화 및 참여인력 간 신청서류, 검토서에 대한 프리뷰 체계 구축
- * 위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그에 따른 설립지원 업무 수행
-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 희망자들에게 창업지원, 모델 발굴 및 확산 등 지원 사업 안내 및 연계 지원

② (사회적)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공시 지원

<가> 운영 지원

- 지역의 (사회적)협동조합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문·경영상담 및 유관사업 연계 지원

<나> 경영공시 지원

- 협동조합 기본법 준수를 위해 사업결산, 정기총회 등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비한 교육 및 코칭 추진
- (사회적)협동조합의 기초적인 운영 및 경영공시 작성을 위한 결산, 총회 교육 실시
- (사회적)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 검토 및 보완 지원
- 경영공시 후속조치 및 상시 관리감독 지원
- 그 밖에 (사회적)협동조합 경영공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

③ DB 구축, 홍보 등 기타 필요한 업무

- 지역 내 (사회적)협동조합의 운영·해산 등을 관리하기 위한 현황DB구축
-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 업무
- 협동조합 실태조사,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, 법/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 기획재정부,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
- 법·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관련 사항 전파, 지역별 실태조사 현황 등 중앙-지역 간 정보 공유
-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

④ 투입인력 요건

- 협동조합 전담인력(투입률 70%이상)을 최소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, 그 중 1인은 협동조합분야 경력*이 1년 이상 또는 진흥원장 명의의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수료증 보유

* 협동조합분야 종사경력 이외에 관련분야 지원경력도 포함

□ 사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

□ 모집권역: 10개 권역 (강원, 경남, 광주, 대구, 대전(세종), 부산, 인천, 전남, 충남, 충북)

※ 2019년도 3년 지정기관 권역인 경기, 서울, 제주(이상 3개)은 공고 제외(진흥원 공고 제2018-222호)

※ 2020년도 3년 지정기관 권역인 경북, 울산, 전북(이상 3개)은 공고 제외(진흥원 공고 제2019-231호)

□ 수행기관 인정기간 및 위탁계약 방법

○ 수행기관 선정 심사에서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자격을 3년까지 인정

- 다만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 사업이 폐지, 사업 수행지역 조정, 예산삭감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

※ 다년간 수행기관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, 수행기관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

※ 자격부여 기준: 2020년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평가결과와 2021년도 선정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 30%이내에서 결정(단, 심사위원회에서 다년지정 범위를 조정하여 결정)

- 다음 연도 공모 선정시 다년간 수행기관이 담당하는 지역은 수행기관 공고를 실시하지 않음

○ 3년 지정은 “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”을 지속하는 경우에 유효

○ 위탁계약은 예산이 확정되는 연도별로 체결

□ 사업예산

<1> 공통사항

- 각각 사회적기업 I, 사회적기업 II(기초경영지원), 협동조합
부문의 지원 조직(인원) 및 예산을 구분(예산산출내역서 3종)
- 사업예산은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 확정결과 및 우선협상
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<2> 사회적기업 I 부문: 총 3,860백만원 이내

-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201.3백만원부터 최대 420.2백만원 이내
 - ※ 경기(420.2백만원 이내), 서울(402.2백만원 이내), 경북(227.5백만원 이내),
부산(226.9백만원 이내), 전북(226.5백만원 이내), 강원(225.5백만원 이내),
전남(225.0백만원 이내), 광주(224.4백만원 이내), 경남(214.8백만원 이내),
대전(세종)·충북·충남(213.7백만원 이내), 대구(212.8백만원 이내), 인천
(208.4백만원 이내), 울산(203.4백만원 이내), 제주(201.3백만원 이내)
-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82.3%를 넘지 않아야 함

<3> 사회적기업 부문 II(기초경영지원사업) : 총 735백만원 이내

-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35백만원부터 최대 75백만원 이내
 - ※ 서울·경기(75백만원 이내), 강원·경북(47백만원 이내), 인천·부산·전북·
전남(44백만원 이내), 대구·광주·경남·충북·충남(42백만원), 울산·제주·
대전(세종)(35백만원 이내)
-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60%를 넘지 않아야 함

<4> 협동조합 부문: 총 1,841백만원 이내

-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82.2백만원부터 최대 182.1백만원 이내
 - ※ 서울·경기(182.1백만원 이내), 인천·울산·경남·제주(82.2백만원 이내),
그 외 권역(114.8백만원 이내)
- 인건비 비중은 기본 위탁금액의 87.7%를 넘지 않아야 함

2 계약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”을 준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

3 입찰 참가자격

□ 자격요건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
- 회계·노무·법무·경영 분야 및 지역 내 자원 동원능력 등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보유한 **단체·법인***

* 전문가 고용현황, 회계법인·컨설팅 회사 등 전문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또는 프로보노 풀 등으로 확인

-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관련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 필요 【붙임1-3】
 - 여러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지원체계와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 체결
 -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·협동조합연합단체 등 관련 조직, 지역 NGO, 종교단체,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, 민간기업, 법률·회계·세무·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인적·물적 연계

□ 참가제한

-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 통합지원기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행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 입찰 참가신청

□ 제출서류

- 입찰참가신청서
- 제안서 10부(원본1부(별도표시), 사본9부)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
 - * 제안서에는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을 구분한 사업계획이 명시되어야 함
 - ** 붙임의 제안서와는 별도로 광역시·도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지역별 네트워크 MAP(제안요청서의 【붙임1-3】 참고)
- 가격입찰서 1부(밀봉)
-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 - 사용인감 사용 시, 사용인감계 1부
-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
-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(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및 당시 제안서 파일을 USB로 제출)
- 사업참여근로자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확인서
- 각 신청서가 수록된 매체(USB 2개)
- 청렴계약이행서약서 / 서약서 / 개인정보 수집, 조회 및 활용 동의서(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참여자 모두 각 1부씩) 각 1부
-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(사본은 원본대조필)
-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(사본은 원본대조필)

□ 접수기간: 2021. 1. 4.(월) 낮 12: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

□ 접수방법: 우편접수

※ 우편 겹면에 「2021년도 □□광역시(도)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」
수행기관 공모 문구 표기

□ 주소: (13292)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6층 인증평가팀

5 협상 및 낙찰자 결정

□ 기본방침

-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,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
-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

□ 적용규정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”(기획재정부 계약예규: 제471호, 19.12.18.)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추진
 - 계약체결 시 「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」, 「(조달청지침)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」 등을 계약사항으로 함
 - 협상은 제안서 기술(PT)평가(80%)와 가격평가(20%)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(다만,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% 미만인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)
 - *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71호(부칙 제247호, 15.9.21)을 준용
- ** 입찰가격 평가기준 및 방법 [붙임3] 참조**

□ 선정 절차 및 방법

<위탁기관 단계별 선정절차>

◆ 입찰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종합심사(기술평가+가격평가) →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→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
심사단계	구 분	내 용
1단계	종합심사 (‘21.1.8.(금) 예정)	• Presentation 심사 •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※ 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심사로 대체 가능
2단계	우선협상 대상자 선정	• 종합심사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※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
3단계	계약체결	•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

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입찰신청자에게 개별 통보

※ 종합심사를 위한 PT자료는 ‘21.1.6.(수)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요망

- 입찰공고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고용노동부, 협동조합 홈페이지
- 입찰공고 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진흥원)의 장에게 제출

* 【붙임1-1】 입찰참가 신청서

-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진흥원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,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진흥원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
-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
 - *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,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
-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진흥원의 고유권한
-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
 -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

□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

- 사업계획의 범위 및 내용, 위탁비용 등의 조정이 가능(협상 시)
-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(금액, 기타 수치자료)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,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
-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“입찰보증금 지급확약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,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(귀속)하여야 하며,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
- 우선협상 완료 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까지는 진흥원 사정에 따라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입찰참가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제출서류의 허위 및 착오기재, 서류 미비로 인한 지원상(심사상) 불이익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게 책임이 있음
- 진흥원은 통합지원기관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는 정성·정량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음
 - 평가결과는 차년도 운영지원기관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성과가 저조한 경우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음
-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, 법적 쟁송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의 경우 잔여 사업비 환수 및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

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

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

- ☐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
- 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
- ☐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☐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)
- ☐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- ☐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
- ☐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“입찰에 관한 서류”를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
- ☐ 문의사항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(☎ 031-697-7722)

8 주의사항

- ☐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